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91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맹견사육허가 요건 중 중성화 수술·기질평가 의무의 예외 마련 등 ..	3
2. 맹견사육허가 요건에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추가	10
3. 맹견사육허가 및 철회권자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14
4. 맹견 5종에 대한 기질평가 비용 지원의 근거 마련	18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1. 21.

다. 회 부 일 : 2026. 1.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물림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령·질병 등으로 인해 중성화수술을 받기 곤란하거나 기질평가장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없이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를 받도록 하고 마리당 최대 25만원의 기질평가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제도에 대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시·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 맹견과 함께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맹견사육허가의 요건으로서 중성화수술 및 기질평가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맹견 5종에 한해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맹견사육허가권자를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 허가를 받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Ⅲ. 검토의견

1. 맹견사육허가 요건 중 중성화 수술·기질평가 의무의 예외 마련 등

가. 맹견사육허가 요건 중 중성화 수술·기질평가 의무의 예외 마련

현행법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맹견의 중성화 수술 및 기질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맹견의 월령 미달, 노화 또는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중성화 수술 및 기질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맹견사육허가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u>사람</u>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u>시·도지사에게</u>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 ----- <u>사람</u> (제70조에 따라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u>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u>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u>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3. -----. ----- <u>월령 미달, 노화 또는 건강상태</u> ----- -----

현행	개정안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략) ⑤ (생략) ⑥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경우로서----- 경우에는-----하지 아니하고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4.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다만, 맹견의 월령, 건강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질평가가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여 맹견사육허가를 할----- -----. 1.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아니한 맹견에 대하여 사육허가를 하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 결과에

현행	개정안
<신설> ⑦ (생략)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3항 단서에 따라 기질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맹견에 대하여 사육허가를 하는 경우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령은 ① 도사견, 핏볼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와 ②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맹견으로 지정한 개를 ‘맹견’으로 규정¹⁾하고 있으며,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맹견의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

1)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가. 도사견, 핏볼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볼테리어(아메리칸 핏볼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입, 중성화 수술, 기질평가 등 요건을 충족하여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 제도²⁾를 규정하고 있음.

【 맹견사육허가 신청 현황 (‘25.9월 기준) 】

구 분		개 체 수
등록		1,656마리
허가	신청	352마리
	완료	276마리
	신청률	21.3%
미허가		1,304마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현재 개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맹견사육허가 요건에 대해 기존 맹견 소유자들은 허위 사망신고, 연락두절 및 기피 등 반발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맹견의 사육이 음성화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³⁾.

이에 개정안은 맹견의 월령 미달, 노화 또는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중성화 수술 및 기질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맹견사육허가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2) 참고자료 1: 맹견 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개요

3) 예컨대, 고령 또는 질병이 있는 맹견의 경우 추가적인 번식 가능성에 비해 중성화 수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기질평가를 위한 이동나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기질평가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있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증 질병에 투병 중인 맹견은 기질평가를 위한 평가장으로서의 이동 자체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노화로 앞이 보이지 않는 맹견의 경우 기질평가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외에 묶어놓고 사육하면서 별도로 외출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질평가의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함(맹견사육환경 조사 결과, 658마리 중 69.1%(455마리)가 실외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남).

것으로, 개물림사고 예방이라는 맹견사육허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맹견사육허가 신청 독려를 위하여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경우의 제재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맹견사육허가 조건을 미준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97조).

현행	개정안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u><신설></u>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1. (생략) 2. <u>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이</u>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①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u> ②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u> -----. 1. (현행과 같음) <u><삭제></u>

현행	개정안
<u>지나도록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3. (생략) ② <u>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u> 제97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 14. (생략)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3. (현행과 같음) ③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취소 또는 철회하는-----</u> ----- -----. 제9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u>제18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u> 5. ~ 1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 -----. 1. <u>제18조제6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u>

현행	개정안
1. ~ 8. (생략)	2. ~ 9. (현행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와 맹견사육허가 조건을 미준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음.

이는 맹견사육허가 관련 중성화 수술 및 기질평가의 예외 규정을 악용할 우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며, 처벌의 수준⁴⁾⁵⁾ 또한 적절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 시 중성화 수술 및 기질평가 등의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하여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4) 현행법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를 받은 경우에 비해 허위 자료 제출 등 행정청의 판단을 왜곡하여 맹견사육허가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는 것에는 타당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5) 안 제97조제4항에 따라 중성화 수술나 기질평가를 받지 않고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대통령령에 따라 부과되는 조건은 번식 금지 혹은 사육장소 이탈 금지 등 맹견사육허가 제도의 취지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조건의 위반은 무허가 맹견사육(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다는 낮은 처벌을 받되, 맹견의 안전관리의무 위반(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개정안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2. 맹견사육허가 요건에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추가

개정안은 맹견사육허가의 요건에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의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한 교육’(이하 ‘사전교육’) 이수 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u>사람</u>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u>시·도지사에게</u>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 ----- <u>사람</u> (제70조에 따라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u>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생략)
<u><신설></u>	4. <u>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생략)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u>시·도시사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농</u>	⑥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u>

현행	개정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⑦ (생략)	따라 조건을 붙여 맹견사육허가를 할----- -----. 1. (생략) 2. 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생략)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령은 맹견과 관련한 교육 및 맹견 훈련 의무로 ①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른 맹견의 사육·관리·보호 및 사고방지 등에 대한 교육(이하 ‘사후교육’) 및 기질평가의 결과를 고려한 허가 대상 맹견 훈련(이하 ‘사후훈련’) 의무⁶⁾와 ②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6) 「동불보호법」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⑥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동불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4(맹견사육허가에 따른 교육이수 명령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맹견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과 제2호에 따른 훈련시간을 더한 시간은 총 20시간 이내로 한다.

1.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의 교육이수: 맹견의 사육·관리·보호 및 사고방지 등에 관한 이론 교육 및 실습교육을 받을 것
2. 허가 대상 맹견의 훈련: 해당 개의 특성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의 결과를 고려한 개체별 특성화 훈련을 시킬 것

관하여 신규 교육과 매년의 보수 교육(이하 ‘정기교육’) 의무⁷⁾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뒤에 허가를 받은 자의 사후교육 및 사후훈련 이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맹견사육허가권자의 행정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맹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도 맹견사육허가 전에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기존의 시·도지사 명령에 따른 사후교육 및 사후훈련 의무를 맹견사육허가 시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붙일 수 있는 조건⁸⁾으로 변경하고, ② 사전교육 이수 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맹견사육허가권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맹견의 안전한 사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의 사육·관리·보호 관련 교육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실질적인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정기교육 이수 의무(법 제21조제3항⁹⁾) 및 미이

7)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6(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교육: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을 것. 다만,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을 것

8) 기질평가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거나 기존 ‘사후훈련’과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므로, 이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임.

9)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

수 시 과태료 부과 규정(법 제101조제2항제3호¹⁰⁾)도 함께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0)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맹견사육허가 및 철회권자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개정안은 맹견사육허가 및 철회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현행)가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u>사람</u> 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u>시·도지사에게</u>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 ----- <u>사람</u> (제70조에 따라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u>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생략)
<신설>	4. (생략)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도지사는</u>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③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u>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u>. 다만, 맹견의 월령, 건강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질평가가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④ <u>시·도지사는</u>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u>시·도지사는</u>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신설> ⑦ (생략)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신설> ① <u>시·도지사는</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④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u>----- ----- ----- ----- ----- -----. ⑤ (현행과 같음) ⑥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여 맹견사육허가를 할----- -----. 1. ~ 3.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①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u>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u>----- -----.

현행	개정안
1. (생략) 2. (생략) 3. (생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취소 또는 철회하는----- ----- ----- -----

현행법은 맹견사육허가 및 철회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¹¹⁾.

이로 인하여 맹견 소유자등은 사육허가 신청을 위해 관할 시·도 담당부서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한다는 부담이 존재¹²⁾할 뿐만 아니라,

11) 「동물보호법」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12) 사례: 평택시에 거주하는 맹견 소유자등은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위해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청에 방문하여야 함(115km 거리, 차 이동 기준 약 1시간 반)

맹견사육허가 제도의 관리 및 감독(시·도지사 권한)은 동물등록정보에 의존하나 현행 동물등록업무의 권한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행정상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맹견사육허가 및 철회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현행)가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

맹견 소유자등의 장거리 이동 부담을 경감하고 맹견사육허가 제도의 관리 및 감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의 소유자등의 맹견사육허가 신청의 부담을 완화하고 맹견사육허가 관리·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다만, 법 제24조제3항·제4항¹³⁾은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맹견의 지정 및 사육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어, 맹견사육허가 제도의 관리 및 감독 권한이 이원화되고 맹견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 「동물보호법」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4. 맹견 5종에 대한 기질평가 비용 지원의 근거 마련

개정안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¹⁴⁾으로 정하는 개’에 대한 기질평가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비용부담 등) ①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u><단서 신설></u> ② (생략)	제25조(비용부담 등) ① ----- ----- ----- ----- ----- 다만, 제2조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맹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맹견사육허가 시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의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최대 25만원을 그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음¹⁵⁾.

1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1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질평가비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이하 “기질평가”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러나 개물림사고 등으로 인해 기질평가를 명령받거나 신청한 경우¹⁶⁾와 달리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이하 ‘맹견 5종’)를 소유한 소유자의 경우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견종을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맹견 5종에 대한 기질평가의 비용은 소유자 부담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맹견사육허가 신청의 독려를 통하여 최근에 도입(2024년 4월 시행)된 맹견사육허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맹견 5종에 대한 기질평가의 비용을 소유자 부담의 대상에서

-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
 2. 기질평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사용 비용
 3. 그 밖에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 ②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의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소유자의 기질평가비용 부담) 소유자는 별표 기질평가비용 지급범위 내에서 마리당 최대 25만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도에서 부담한다.
- 16)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① 시·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도지사에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외하는 것만으로는 동 비용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불명확하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동물등록된 맹견 1,656마리에 대하여 마리당 추가 지원액 25만원을 고려하는 경우, 재정 소요액은 4억 1,4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됨.

이에 대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맹견사육허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질평가 비용 전액 지원 등의 인센티브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에 동의하면서도, 기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소급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425

참고1

맹견 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개요

- (배경)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수 증가*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 지속 발생**(연 약 2,200건)으로 대책마련 필요

* 반려견 개체수/반려견 양육가구 수(추정) : ('12) 439만마리/320만 가구 → ('22) 544/450만

** 국내 개물림사고 건수(소방청) : ('17) 2,405건 → ('19) 2,154 → ('22) 2,216

- (사육허가제도) 맹견(5종*), 사고견**을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시행하여, 사육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육 등 추가 조치

○ (대상) 맹견(5종*), 사고견** 대상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와일러

** 사람·동물에 위해 가한 개(지자체 명령),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개(소유자 신청)

○ (요건) 양육자는 소유 맹견의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충족

*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월령 8개월 미만으로 중성화수술이 어려운 경우(8개월령 도달 후 중성화수술 완료 및 증빙 필요)

○ (신청)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반려인, 영업자)은 시·도지사에 맹견사육허가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 제출(30일 이내)

- (기질평가제도)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 판단

○ (운영) 시·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 동물에 대한 사육허가, 맹견 지정·미지정**, 교육·훈련 명령

* 행동지도사, 수의사, 동물복지 등 관련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

** 사고견 중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낮다고 판단된 개

○ (평가) 5개* 분야, 12개의 세부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평가결과 1점이 한 개 항목 이상에서 나올 경우 재응시** 명령

* 접근 공격성 평가, 놀람촉발, 두려움 촉발, 사회적 공격성 평가, 흥분촉발, 놀람촉발

** 평가점수는 1~5점 척도, 재응시 명령시 교육훈련 권고 가능